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62

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 박완주·문진석·신정훈

박영순 · 홍성국 · 문정복

윤재갑 · 김영배 · 양정숙

김승원 · 강준현 · 이성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저출산·고령화, 저성장·양극화,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.

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,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·도지사 등 지방자치 전국적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가자치분 권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, 국무총리 및 시·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회의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함.

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64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,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분권회의는 대통령,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 전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, 시·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 대 표자로 구성함(안 제3조).
- 다.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라.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·조정하고,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(안 제5조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(안 제6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4조의2에 따른 국가자치분권 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정 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국가자치분권회의의 기능)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 - 3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 - 4.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의장이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제3조(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) ① 국가자치분권회의(이하 "분권회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- 1. 대통령
- 2. 국무총리
- 3. 기획재정부장관
- 4. 교육부장관
- 5. 행정안전부장관
- 6. 국무조정실장
- 7. 법제처장
- 8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- 9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
- ② 대통령은 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,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된다.
- ③ 의장은 분권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- 제4조(분권회의의 운영) ① 분권회의는 분기별로 각 1회 개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-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분권회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- ② 분권회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- 을 분권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③ 분권회의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분권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소속기관의 청사에서 개최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권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실무협의회) ① 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·조정하고, 분권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 -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각각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
 - 2.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, 교육부차관 및 행정안전부차관,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, 법제처 차장
 - 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(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)
- 4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

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-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심의 결과의 이행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결과를 분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